

◆ 질의와 회신 ◆

지방세법령 질의 · 회신

- 행정자치부 세정과 -

1. 종업원할 사업소세 관련 질의

【질 의】

1. 당사는 법인사업자로 실제 근무 인원은 50인 이하입니다. 이번 지방세조사에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근무하지 않은 인원 3명을 포함하지 않아 사업소세 신고 누락으로 확인되었으며, 사업소세 신고에 대한 질문 사항이 있어 문의합니다.

2. 50인 초과 인원 산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 동일부서 당월 퇴사자의 후임자 입사 시 퇴사일 이후 입사할 경우→ 판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퇴사 9월 15일, 입사 9월 20일 → 이런 경우 1명 처리 여부

나. 위의 경우 업무 인수인계로 인한 후임자 선입사한 경우의 인원 계산 방법

다. 산업재해로 인한 근무하지 않은 인원의 포함 여부(회사 급여 지급 없음)

라. 외국인 근로자(산업연수생) 인원의 포함 여부

마. 시간급 직원 당월 중도 입사자의 경우(1개월 미만 일용직 계산 대상 여부)

바. 시간급 직원 당월 입사 후 당월 중 퇴사 시 일용직 계산 대상 여부

3. 지방세 조사 내역서에 총 급여로 사업소세 및 가산세를 적용하고 날인을 했는데 비과세 급여는 차감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소명자료 제출로 비과세 급여 공제 가능한지

4. 당사에서 자진 신고 납부하고자 할 때 50인 이하인 달과 50인 초과인 달이 있어 50인 초과한 달의 비과세 급여(생산직 근로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로 인한 급여를 제외한 급여가 100만원 이하 직원)는 당월 해당 연장, 야간, 휴일근무 금액전액 비과세 인지(소득세법상 연간 240만원 임)

회신

지방세법시행령제204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243조제6호에서 “임원·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을 불문한 일체의 고용계약을 말하며, 현역복무 등의 사유로 인해 사업소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종업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종업원”은 급여지급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월에 퇴사자의 후임자 입사시 후임자가 퇴사자의 퇴사일 이전·후의 입사일에 관계없이 종업원은 2명으로 산정되며, 산업재해로 인해 근무하지 않는 기간동안은 종업원으로 산정되지 아니하며, 외국인근로자(산업연수생)은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귀문 시간급 직원의 인원 산정은 지방세법시행규칙제111조에 의하여 시간급 직원의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상시고용하는 종업원 수에 합하여 면세점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세정-4299, 2004. 11. 29)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관련 질의

【질 의】

가. 별첨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같이 2003. 2. 11일 수세미 제조업 및 무역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 설립 후 공장을 취득하지 못해 건물을 임차하여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마땅한 공장을 발견해 이를 취득하여 현재까지의 기계시설일체를 이전해서 제품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에는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서는 등록세를 동법 제120조 제3항은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이런 경우 이 법인이 취득하고자하는 공장에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답설>

등록세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유 : 2003. 2. 11일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은 감면이 된다. 따라서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05. 2. 10일 이전에 취득하는 사업용자산이기 때문이다.

<을설>

감면받을 수 없다.

이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4호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업후 1년이 넘어 취득하는 건물의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에 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질의자의 견해>

갑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장이 있어야 하는데 임시로 빌려쓰던 장소에서 자기소유건물을 취득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사업의 확장이라고 볼 수 없다. 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속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6조 제4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2003. 2. 11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창업한 후 부동산을 임차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가 창업일(2003. 2. 11)부터 2년 이내에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등기)한 후 종전의 기계설비를 이전하여 동종의 제조업을 계속 영위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및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사항입니다(세정-4058, 2004. 11. 11)

3. 취득세 비과세를 위한 대체 취득시기 관련 질의

【질 의】

☐ 사실관계

- 사업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매수 청구
- 사업인가일 : 1991. 8. 14
- 보상협의일 : 2004. 5. 3
- 보상금 수령일 : 2004. 7. 28
- 대체취득일 : 2004. 5. 21

☐ 질의내용

○ 과세관청에서는 지방세법 제109조에 의거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 때 취·등록세가 비과세 된다는 규정을 들어 보상금 수령전에 취득한 물건은 비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그런데 제 의견으로는 보상금 수령전에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인가 및 보상협의 일 후에 그 보상금의 수령을 예상하여 다른 물건을 취득한 경우이므로 취·등록세 비과세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에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도시개발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 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

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 수용된 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시기) 이후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2004. 7. 28)부터 1년이 되는 날(2005. 7. 27, 종기) 까지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한다면 보상금을 받기 전에 취득(2004. 5. 21)한 경우에도 수용된 부동산 가액의 범위내에서는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세정-4098, 2004. 11. 16)

4. 공장구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질의

【질 의】

1. 거래처 회사

법인명 : (주)○○○○○

설립일 : 2000년 6월 14일

대표자 : ○○○

업태 및 종목 : 제조 및 도매/이동통신용 전력 증폭기(파워앰프)

본사주소 : 서울특별시 ○○구 ○○동

지점 및 공장 : ○○ ○○시 ○○동

기업부설연구소 : 서울특별시 ○○구 ○○동

2. (주)○○○○○는 설립 후부터 (주)○○○○○에서 아파트형공장을 임대받았으며 이 아파트형공장을 2003년 12월 22일자로 매수하였습니다. 매수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습니다.

3. (주)○○○○○는 2000년 10월 17일자로 기술개발촉진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으며 지방세법 제282조에 의하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주)○○○○○가 취득한 아파트형공장의 전체 전용면적중 약 61%는 기업부설연구소 이므로(임대받을 때부터 현재까지 사용 중임) 기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약 61%는 당연히 환수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회신

지방세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되,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28조에서 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춘 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아파트형 공장을 임차하여 그 전용면적중 일부(61%)를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과학기술부장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일 : 2000. 10. 27)하다가 동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2003. 12. 22)한 후 그 일부(61%)를 계속하여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한다면 지방세법시행령 제228조에서 기업부설연구소로 규정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후 과학기술부장관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을 것”이 아니라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하기 전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은 지방세법 제282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세정-4133, 2004. 11. 17)

5. 재래시장 재건축사업관련 감면여부에 관한 질의

【질 의】

시장재건축사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 관련규정 :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9조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시장재건축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시장재건축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 또는 3년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이 당해 사업시행으로 시장재건축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시장재건축사업 시행내용

- 중소기업청의 시장재건축 사업시행구역 선정 : 2001. 7. 30
- 시장재건축조합 설립 인가 : 2002. 2. 2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02. 4. 3
- 사업시행자 : ○○시장재건축조합 및 (주)○○도시 공동시행
- 건축물 사용승인 : 2004. 9. 14

※ 신축 건물 형태

- 1개동 판매시설 4,277.51㎡(23개 점포)
- 공동주택 16,624.63㎡(312세대 : 조합원 36세대, 일반분양 276)

○ 갑설 : 면제대상이 아님.

취득세 등이 과세면제되는 시장재건축사업이라 함은 재래시장 재건축 본래의 사업 즉 재래시장 건물 신축, 확장, 현대화사업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시행자의 수익창출을 위한 분양사업 또는 토지소유자를 위한 주택건설 등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같은 부수사업에 대하여는 면제대상이 아님.

○ 을설 : 면제대상임.

감면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사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재래시장의 재건축사업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전체 사업중에서 시장부분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기존 부동산소유자인 조합원이 새로이 취득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면제대상임.

○ 우리시 의견 : 갑설이 타당함.

회 신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9조에서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구역안에서 취득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가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직접 사

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 또는 3년 전부터 계속하여 입점한 상인이 당해 사업시행으로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시행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규정하며,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에서 “재래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에서 도매업자·소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근대적인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현대화 및 정보화를 필요로 하거나 건물시설이 노후되어 개·보수 또는 재개발·재건축을 필요로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주상복합건물의 아파트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되어 시장재건축조합설립인가(2002. 2. 2)를 받은 후 (주)○○○○와 함께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어 주상복합건물(공동주택 및 시장점포)를 신축하였다면 조합원이 취득한 공동주택은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 제1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시장재건축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동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기존 시장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자 또는 3년전부터 입점한 상인이 당해 사업시행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감면조례에서 규정하는 취득(등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정-4143, 2004. 11. 18)

6. 재건축조합의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취득관련 질의

【질 의】

현재 행자부에서는 재건축조합에 신탁등기된 토지 중 일반분양분에 해당하는 토지는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결정하고 있습니다.(심사결정 2004-128호(2004. 6. 28), 심사결정 제 2004-220호(2004. 8. 30)).

문제는 재건축조합이 언제 취득하는지에 대하여는 불분명하나, 재건축조합이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준공시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한 지자체에서는 일반분양하는 시기로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시기를 분명히 정해야 혼선이 없게 되고 가산세 문제도 발생되지 않음으로 취득시기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

1. 구지방세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10항에서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귀문의 경우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조합용 토지를 신탁받아 공동주택을 신축한 후 일부는 조합원에게 이전하고 나머지는 일반분양하는 경우 일반분양하는 부분의 토지는 조합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일반분양하는 부분의 토지에 대해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날은 토지에 대한 신탁등기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신탁등기일에 신고납부할 당시 일반분양하는 부분의 토지 면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탁등기일 이후 면적가액이 확정되는 때 수정신고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정-4134, 2004. 11. 17)

7. 선박 취득세 부과관련 질의

【질 의】

저는 낚시가 취미라서 ○○만에 소형 모타보트를 잘 아는 지인에게 그저 얻다시피 하나 구입해서 ○○근처에 배를 두다가 태풍과 도난 때문에 할 수 없이 △△요트경기장에 정박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취득세를 부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모든지역 해안선따라 정박해놓은 어선을 제외한 모든선박(소형 고무보트 포함)에서 레저배를 조사해서 신문과 언론을 통해서 공포를 한 뒤 공평하게 전국적으로 시행해야지 ○○구청에서 요트장에 와서 명단을 압수해가지고 등록해서 취득세를 부과한다니 이런 행태가 어디있습니까? 아무리 지방세법에 의거한다지만 20년 전부터 하던지 지금에와서 갑자기 한다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미리 부과한다고 하면 배를 다른지역에 옮기든지 처분했을텐데 10일전에 우편으로 문서를 송부했다고 하던데 이사가서 어제 다른사람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는 하나지만 여럿이 공동관리하는 경우도 많고(본인포함) 동해안이라서 일기가 좋지않아 한달에 1번 탈까 말까하는데 계류비 10만원주고 취득세 내고 어찌란 말입니까? 등록도 되지 않은 배를 취득세만 부과한다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아니면 다시한번 재고하여 공평하게 납세자가 수궁이가는 조세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요트장에 명단을 압

수해서 요트계류장에 있는 레저용 배에만 하지 말고 우리나라 전해안선을 따라 정박중인 모든 배(어선제외)에 부과해야 하고 또한 이는 국가적차원에서 전국적으로 모든 해역을 조사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해야될 것을 왜 ○○구청에서만 독단적으로 시행합니까?

참고로, 우리나라 50cc 이하 모든 오토바이는 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나요?

등록도 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없는 물건을 무조건 취득세 부과 대상의 근거가 있다고 무리하게 시행하면 국민들은 이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는 레저배(요트포함)수가 약 25만 여척이며 그에 따른 계류장 시설이 약 2만개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계류장이 ○○요트장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 1-2개는 십여척밖에 계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등록제도가 되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데 우리는 등록도 되지않는 배에 취득세 부과라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 신

지방세법 제 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선박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에서 선박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선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104조 제5호에서 선박이라 함은 기선, 범선, 전마선 등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13조제1항에서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문의 경우 소형모타보트라 하더라도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한다면 지방세법 제104조제5호 및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동법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선박을 취득한 후 선박법에 의거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동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선박 소재지의 도가 되는 것이므로 선적항이 있는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되는 것이고, 선적항이 없는 선박은 정계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되는 것입니다. (세정-4533, 2004. 12. 10)

8. 선적항 없는 선박의 취득세 납세지 관련 질의

【질 의】

금번 요트를 구입하여 선박취득세를 납부하려고 하니 각 구청의 납세지에 관한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합니다.

선박의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세는 선적항소재지(지방세법제125조제2호), 재산세는 선적항 및 정계장 소재지(지방세법제181조)가 납세지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 지방세심무(김의효저)를 보면 등록할 필요가 없는 선박은 취득자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산 수영요트경기장내 정박되어 있으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요트 선박의 취득세납세지는 어디지요?

<답설> 정계장 소재지

<을설> 선박취득자의 주소지

<병설> 취득물건소재지의 시도

○ 취득물건의 소재지가 될 경우 소재지의 관할 납부지 구청은 어디며, 그리고 요트를 수입할 경우는 납세지는?

1. 세관이 있는 구 관할 구청
2. 판매장소(보관장소)

회 신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선박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25조 제2호에서 선박등기 및 선박법 제2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는 선적항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181조 제2항 제2호에서 선박법에 의한 선적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되, 선적항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선박에 대한 취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선박 소재지의 도가 되는 것이므로 선적항이 있는 선박은 선적항 소재지 관할 시·군·구를 취득세의 납세지로 하고, 선적항이 없는 선박은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관할 시·군·구를 취득세의 납세지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9항의 규정에 의거 수입자와

실수요자가 동일한 수입 선박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이 취득일이 되므로 세관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의 시·군·구를 납세지로 보고,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므로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장소인 영업장소(판매장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를 납세지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세정-4140, 2004. 11. 17)

9.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

【질 의】

당사는 2004년 8월 25일 골재 채취업으로 법인설립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1) 조세특례 제한법 제6조 제1항에서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규정하면서 동법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호에서는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2호에서는 거주지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제3호에서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제4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 및 동법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의 내용>

A법인이 1996년까지 골재채석장 영업을 영위한 후 부도로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태에서 A법인소유의 기계장치를 B법인에게 2002년 4월경 양도하였고 골재채석장 영업을 영위하던 임야는 C법인(골재채석장 영업을 하지 않는 법인)에게 2002년 1월경 양도하였으며 현재는 기계장치도 철거된 상태이며 건축 및 유체동산이 아무것도 없는 임야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04년 9월 1일 광업·제조·석재 및 토사석 채취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골재

채석장인 임야는 C법인으로부터 2004년 10월경 매입하였으며, 기계장치는 B법인으로부터 인수한 것이 아니라 신규로 기계장치를 설치하려고 계약한 상태이며 나머지 환경영향평가, 수전설비, 지하수개발시설장치 등 채석장영업을 하기 위한 모든 시설을 신설법인이 직접 시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사는 당시 골재채석장 영업을 영위하던 A법인에게는 용벽과 관련된 건축물 일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불하였으며 나머지 도로공사 골재채석장 영업을 하기 위한 모든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는 신설법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시설중입니다.

골재채석장사업을 영위하던 곳에 약 7년간 아무 사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 및 기계장치는 이미 3자에게 양도된 후 철거된 상태이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 임야상태에서 당사는 신규로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또, 건물, 수전설비, 지하수개발 도로공사의 모든 공사를 신규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당사와 같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지 않고 토지만 매입하여 종전의 사업을 계속할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여부를 질의합니다.

(타인의 공장용 건물을 취득, 동종의 사업을 할지라도 기계장치 및 생산설비를 취득자가 설치했을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가 아닌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19조 제3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문의 경우 종전 A법인이 1996년까지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다가 부도처리되자 사용되던 기계장치는 B법인에게 양도되어 철거되고, 임야는 골재채취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C법인에게 양도되어 7년 동안 나대지 상태의 임야로 있다가 2004. 9. 1 설립된 귀 법인이 동 임야를 C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후, 신규로 새로운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환경영향평가, 수전설비, 지하수개발시설장치 등 골재채취업을 영위하기 위한 일련의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된다고 하겠으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세법-4191, 2004. 11. 20)

10. 건설사 재료비 매입부가세의 취득세 과표산입에 대한 질의

【질 의】

건축주 A는 주상복합건물 1개동을 건립하기 위하여 시공사 B와 2002년 6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04년 3월 동 건물을 준공하였고 A는 B에게 공사도급계약상 공사비 전액을 지불하였음.

A가 위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A가 B에게 지급한 B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직접재료비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를 A가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으로 규정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

<부가가치세와 과세표준의 범위>

○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753호, 1995. 8. 21) 제82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면 1995. 8. 21 이후 발생한 매입세액 불공제 등 모든 부가가치세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행자부 세정 13407-1157, 2000. 10. 2)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거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음. (행자부 세정 13407-1235, 2000. 10. 24)

회 신

지방세법시행령 제82조의 3 제1항에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소개수수료, 설계비, 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건축주(A)의 건물 취득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동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부가가치세는 건축주(A)와 시공사(B)간에 체결된 도급계약서에 따라 건축주(A)가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직접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시공사(B)의 공사원가계산서상 직접재료비에 대한 매입부가가치세는 동 건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세정-4279, 2004. 11. 25)

11. 자기주식 유상취득 후 소각시 과점주주 납세의무관련 질의

【질 의】

1. 과점주주 취득세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외국법인 A와 비상장중소기업인 B법인에게 50 : 50의 비율로 출자하고 있었으나, 최근 외국법인 A의 지분을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에 따라 외국법인 B의 지분 50% 중 37.5%는 당사가 직접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12.5%는 비상장 중소기업인 B법인이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및 제446조(주식의 소각)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유상소각하기로 결정하였음. 당사의 지분인수와 비상장 중소기업 B법인의 자사주 취득은 동일 시점에 발생하며, 비상장중소기업 B법인은 자사주 취득일에 소각 및 자본감소 등기를 실행할 예정임.

- 당사의 주식인수와 비상장중소기업 B법인의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일정은 아래와 같음.

2004. 10. 28 주식인수계약 체결

2004. 11. 04 주식 인수대금 지급 완료

비상장중소기업 B법인의 자사주 실효절차 완료

비상장중소기업 B법인의 발행주식수 감소 동기

<질의내용>

이 경우 당사의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당사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기존 보유분과 신규 취득분의 합계인 87.5%로 계산하여야 함

(이유)

관련예규 세정 13407-아365, 1998. 9. 4 및 세정 13407-1039, 2000. 8. 28에 따르면 불균등 유상감자로 인하여 주식보유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당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비상장중소기업 B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수를 제외하여 계산하여야 함.

따라서 당사의 기존 보유주식과 추가 취득 분의 합계인 87.5%를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함.

<을설>

당사의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비상장중소기업 B법인의 발행주식 전체(100%)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함.

(이유)

지방세법 제22조 제2항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비상장중소기업 B법인과 당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의 취득 주식수는 당사의 인수 주식수와 비상장중소기업의 자사주 취득주식수의 합계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과점주주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비상장중소기업 B법인의 전체 주식(지분율 : 100%)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여야 함.

회 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문의 경우 귀사와 외국법인(A)이 비상장법인(B)의 주식을 각각 50%씩 소유하고 있다가 외국법인(A)의 소유주식(50%) 중 37.5%를 귀사가 추가로 취득하고 나머지 12.5%는 비상장법인(B)이 상법규정에 의거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다면 귀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 보유주식(50%)과 추가 취득주식(37.5%)의 합계(87.5%)에 대해서만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세정-4379, 2004. 12. 02)

12. 현물출자 재산관련 취득세 감면여부에 대한 질의

【질 의】

가. 질의요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7조, 제120조제1항제6호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신설된 법인에게 현물출자를 한 경우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감면대상 자산가액 산정시 부채포함 여부

나. 사실관계

- “갑” 법인 :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 “을” 법인 : 신설법인

“을” 법인 설립시 발행한 주식내용

주주명	인수 주식수	액면금액 총액	발행가액(원)	출자방법
갑 법인	15,000	75,000,000	150,000,000	발기인-현물출자
병 법인	25,000	125,000,000	250,000,000	발기인-현금출자
일반주주	10,000	50,000,000	100,000,000	모집주주-현금출자
	50,000	250,000,000	500,000,000	

가. “갑” 법인이 “을” 법인에게 현물출자한 자산명세

- 토지 : 140,000,000원
- 건물 : 240,000,000원
- 계 : 380,000,000원

나. “갑” 법인이 “을” 법인에게 현물출자시 이전될 부채액 : 230,000,000원

다. “을” 법인이 법인설립시 모집설립조사신청 발기인에 대한 조사보고서 공정증서임.

라. 사실상 현물출자 가액 : 150,000,000원 [(자산 380,000,000원) - 부채(230,000,000원)]

다. 질의사항

위 사실관계 하에서 “갑” 법인이 “을” 법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1항제7호, 제120조제1항제6호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및 그 재산에 관한 동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현물출자로 이전되는 자산가액(380,000,000원)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되는 것임.

(근거)

“갑” 법인이 부채를 포함하여 현물출자로 이전된 자산이 신설법인 “을” 법인에게 제3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전액 감면되는 것임.

<을설>

현물출자로 이전되는 자산가액(380,000,000원) 중 사실상 현물 출자한 가액(150,000,000원)을 제외한 부채부분(230,000,000원)은 취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되지 아니함.

(근거) 조세특례법시행령 제35조제1항(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현물출자 대상이 되는 자산은 토지, 건축물 및령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라고 하였으나, 그 자산 중 부채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부채 부분에 해당된 자산가액(230,000,000원)은 취

득세와 등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임.

라. 우리시 의견 : 을설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7호 및 제120조 제1항 제6호에서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취득하는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38조 제1항에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그 제2호에서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이라고 규정하며,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함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토지, 제2호에서 건축물, 제3호에서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이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제조업 등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1호 내지 제4호의 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문의 경우 을법인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갑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및 건축물을 현물출자하여 을법인을 신설하면서 당해 토지 및 건축물과 관련된 부채를 함께 인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에서 인계하는 부채에 관계없이 토지 및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해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물출자에 따라 을법인이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등록)세의 전부가 면제되는 것(갑설)입니다. (세정-4420, 2004. 12. 03)

13. 상속으로 인한 법정지분 취득 후 협의분할시 취득세 관련 질의

【질 의】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고 상속개시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협의분할이 안되어 상속등기를 못하고 있는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일단 취득세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다음의 사항을 질의드리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신고시 상속인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지분이 큰 대표상속인이나 아무 상속인의 지방세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하여도 무방한지요?
2. 협의분할이 안되었더라도 일단 법정지분에 의하여 취득세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취득세 신고가 가능한지요?
3.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세신고 후 협의분할이 되었다면 이미 신고한 취득세에 대한 수정신고 사유가 되어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4. 상기 수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면 가산세부담은 어떠한지요?

회신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9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18조 제1항에서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 또는 납입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연대납세의무 또는 연대납입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문의 경우 상속으로 공동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각자가 법정상속 지분만큼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만 공동상속인 각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민법 제1013조에서 규정한 협의에 의한 분할전에 공동상속인중 누구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할수 있는 것이며, 취득신고를 한 후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였다면 민법 제1015조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협의분할에 따른 별도의 취득신고는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정-4529, 2004. 12. 10)